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 운영 매뉴얼



본 매뉴얼은 대학의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도입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과 대학 창업교육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 I. 창업휴학제 ..... 4
  - 1. 추진배경 및 목적 .....4
  - 2. 운영기준 .....4
    - 가. 창업휴학의 정의 .....4
    - 나. 창업휴학이 인정되는 창업의 종류 .....4
    - 다. 창업휴학의 운영기준 .....5
    - 라. 대상 학생의 자격요건 .....6
    - 마. 대학·학생의 역할 .....7
  
- II.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 8
  - 1. 추진배경 및 목적 .....8
  - 2. 운영기준 .....9
    - 가.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의 정의와 창업실습교과 .....9
    - 나.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활동의 종류 .....10
    - 다.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의 운영기준 .....11
    - 라. 대상 학생의 자격요건 .....13
    - 마. 대학의 역할 .....13
  
- III. 창업학점 교류제 ..... 14
  - 1. 추진배경 및 목적 .....14
  - 2. 운영기준 .....14
    - 가. 창업학점 교류의 정의 .....14
    - 나. 창업강좌의 정의 .....15
    - 다. 창업학점 교류의 운영방식 .....15
  
- IV. 추진체계 ..... 17
  
- V. Q/A .....18



# I. 창업휴학제

## 1 추진 배경 및 목적

창업휴학제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대학에 창업휴학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창업으로 인한 학업의 단절을 방지

## 2 운영기준

### 가 창업휴학의 정의

#### ■ 창업휴학

- 휴학사유가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2년(4학기)까지 연속으로 휴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 나 창업휴학이 인정되는 창업의 종류

#### ■ 창업휴학의 인정대상이 되는 창업

- 창업휴학의 대상이 되는 창업은 학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
  - 단, 관련전공 분야의 창업이 아니더라도 대학의 판단으로 창업휴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에 명시하고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승인이 필요
-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업종의 창업은 창업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외대상 업종이 전공과 일치하는 경우 대학의 판단으로 인정

### 〈허용 제외 대상 업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부동산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캐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96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참조

## 다 창업휴학의 운영기준

### ■ 창업휴학의 기간

-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업휴학의 최대 허용기간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2년(4학기)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학칙에 의거 대학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
  -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휴학을 포함하여 6학기를 초과하는 휴학기간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
- 창업휴학기간은 대학의 일반휴학제도에서 허용된 기간과 별도의 기간이며 일반휴학제도와 연계 또는 별도 신청
  - ※ 예시) 일반휴학을 통해 연속으로 휴학이 가능한 기간이 1년이고 창업휴학 허용기간이 2년인 경우, 일반휴학과 연계하면 최대 3년까지 연속으로 휴학

### ■ 창업휴학의 신청

- 창업휴학의 신청시점은 일반휴학의 신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매 학기별로 신청
- 창업휴학제도의 편법활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창업휴학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을 했거나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창업휴학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권고

- 창업기준일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

'14. 3. 15. 창업휴학 신청자는 '14. 2. 16. 이전에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창업을 한 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

### ■ 창업휴학의 승인

- 창업휴학의 승인을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 조건과 구비서류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반드시 창업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되, 대학 내 창업전담기구(창업교육센터 또는 창업교육 전담기구)를 활용하거나 전담기구가 없는 경우 창업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현장점검을 수행
- 창업휴학의 정량적인 조건이 만족되더라도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대학 내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창업휴학 거부

사업자등록증은 갖고 있으나, 사업체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현장방문 평가 결과 사업체의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대상 학생의 자격요건

### ■ 대상학년 및 자격요건

- 준비되지 않은 학생의 창업을 예방하기 위해 대학 창업교육 과정을 일정수준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 필요. 요구되는 일정수준은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예시1)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동시에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과정(정규교과)을 6학점 이상 수강한 학생  
 예시2)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6개월 이상 창업동아리 활동을 한 학생으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단 창업 경진대회는 대학, 공공기관 및 정부, 기업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경진대회로 하되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불가

- 사업자 등록증에 신청학생이 대표(공동대표 포함)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 필요
  - 단, 실질적으로는 공동창업이지만 공동대표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 이 경우 인정이 가능한 기준을 제시



## 대학·학생의 역할

### ■ 대학

- 창업휴학 시행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제·개정 등 창업휴학 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 조정·관리를 수행
  - 대학별로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창업휴학의 운영계획 수립 및 승인에 대한 업무를 총괄
  - 창업휴학의 승인은 서류심사와 현장방문평가를 동시에 실시한 후 결정
  - 대학의 창업지원조직은 학생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 ※ 창업지원조직 : LINC사업 참여대학은 창업교육센터가, 그 외 대학은 창업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조직으로 대학 자체적으로 구성. 단 별도의 창업지원조직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 관련 조직에서 역할의 수행이 가능하나, 관련 조직의 업무규정에 해당 내용을 명시.
  - 창업지원조직은 창업휴학의 대상이 되는 학생창업기업의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를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에 보고

### ■ 학생

- 창업휴학 운영 절차에 따른 참여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 창업휴학의 신청은 일반휴학의 신청과 달리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
-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 협조





## II.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실습교과)

### 1 추진 배경 및 목적

창업 준비활동 및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

#### ■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 해소

-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창업 준비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함으로써 학생의 부담을 경감
  - ※ '대학생 창업에 대한 인식조사' (2013) 결과 대학생의 65%는 과도한 학업부담으로 인한 체계적인 창업 준비 시간의 부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

#### ■ 창업으로 인한 학업의 중단 방지

- 창업을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
  - 창업은 본인이 보유한 기술을 상품화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학습한 전문적 기술을 활용하고 경영전반의 의사결정을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현장실습의 목적에 부합

#### ■ 창업대체학점 인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창업실습교과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

- 학점으로 인정되는 창업(준비)활동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창업실습교과의 운영이 학업의 질을 낮출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학생이 창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2 운영기준

### 가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의 정의와 창업실습교과

####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

- 창업 준비활동 및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는 교육과정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 활동과 관련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

-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교과의 경우 대학정보공시의 창업강좌로 인정

※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지침서에 따르면, 대학의 창업활동은 9번째 영역으로 구분. 학생 창업교육의 주요 항목은 창업강좌와 창업동아리이며, 현장실습 및 캡스톤디자인은 창업교과와 관련성이 높음

#### 〈산학협력 활동과 창업〉

2012년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지침서 작성 항목	
I. 산학협력단 기본정보	
II. 산학협력 교원인사제도 운영현황	
III. 산학협력단 설립 및 운영현황	
IV. 현장중심 교육과정 및 산업체 연계교육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V. 기술지주회사, 가족회사, 학교기업 현황	
VI. 산학협력 연구실적 및 연구장비 현황	
VII. 지식재산 보유 현황	
VIII.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IX. 창업지원현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원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li> <li>2. 학생 창업교육 및 지원현황</li> <li>3. 학생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li> <li>4.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활동 현황</li> <li>5. 대학 기술 기반 기술창업 현황</li> </ol>



## 나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활동의 종류

-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창업 준비와 창업으로 구분되며, 일정 조건 충족 시 학점 인정

### 〈창업대체학점 인정 예시〉

창업대체학점	구분	운영형태	인정학점
학점으로 인정되는 창업활동	창업준비	창업동아리	3~6
	창업	창업	6~18

## ■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창업 준비활동

-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창업동아리 활동으로 한정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
- 창업동아리 활동이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대학 내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등록 ② 다수의 참여 학생 ③ 구체적 결과물의 제출·평가의 3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 자율로 결정

### 〈창업동아리 활동의 대체학점 인정 예시〉

- (전임교원의 지도) 대학의 전임교원(산학협력 중점교원 포함)이 동아리 지도 교수로 등록하여 학기별로 5회 이상 지도한 경우
  - ※ 지도교수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창업동아리 지도교수의 활동을 업적평가에 반영
- (다수의 참여 학생) 2인 이상의 학생이 참여학생으로 등록해야 하며, 최대 10인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함. 최대 허용인원 내에서 타 대학의 학생이 참여하는 것은 무관
- (구체적 결과물의 제출 및 평가) 사업계획서 및 시작품과 같이 창업동아리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결과물의 제출과 평가 실시

## ■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창업활동

-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창업은 학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
  - 관련전공 분야의 창업이 아니더라도 대학의 판단으로 허용(이 경우 세부 내용을 규정에 명시하고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인정)

## 다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의 운영기준

### ■ 창업대체학점 인정 교과목의 명칭과 분류

- 창업동아리 활동과 같은 창업 준비활동의 교과명은 '창업실습'으로 창업활동의 교과명은 '창업현장실습'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
- 창업대체학점 인정 교과목은 다양한 전공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양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을 권고

### ■ 창업실습교과 이수학점

- (창업실습교과 이수학점) 창업동아리가 '창업실습' 교과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이수 가능한 학점 수는 한 학기 3학점 이하, 연간 6학점 이내에서 이수가 가능하도록 운영
  -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178개 대학 중 127개 대학이 3학점 이내, 38개 대학이 6학점 이내로 92.7%를 차지
- (창업현장실습교과 이수학점) 창업이 '창업현장실습' 교과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학점을 인정하되 6학점 이상~18학점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결정
  - ※ 4년제 대학 : 2~4학년 대상(총 6학점~18학점)
  - ※ 2~3년제 대학 : 2~3학년 대상(2년제: 6학점, 3년제: 12학점)
  - '창업현장실습'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장실습교과를 활용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
    - ※ 취업을 원하는 학생은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고, 창업을 원하는 학생은 창업을 통해 창업현장실습 수행
  - '창업현장실습'과 '현장실습'의 중복수행은 불가. 그러나 현장실습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현장실습' 수행 후 '창업현장실습'의 수행은 가능하도록 설계 필요
    - ※ 현재 현장실습은 1일 8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으로 실시하는 경우 학점 인정

#### 〈창업현장실습 이수학점 예시〉

교과목명	실습기간(시간)	학점	
일반 현장실습1	4주(160시간) 이상	2	
일반 현장실습2	6주(240시간) 이상	3	
일반 현장실습3	8주(320시간) 이상	4	
창업현장실습	방학 중	8주(320시간) 이상	4
	학기 중	12주(480시간) 이상	6



- '현장실습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창업실습교과를 개설하고 이에 대한 운영 규정을 명시

## ■ 창업실습교과의 신청 및 승인

- '창업실습' 교과의 신청과 승인
  - 학기 개시 1개월 전까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 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학기 개시일 15일 전까지 학사운영 관련 부서에 승인 요청
    - ※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시 신청서의 내용 확인 및 현장점검 수행
- '창업현장실습' 교과의 신청과 승인
  - 창업현장실습 신청은 현장실습의 신청과 동일한 기간 및 절차로 진행하되, 대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창업 이후에 '창업현장실습' 교과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창업 이전에도 창업현장실습의 신청 가능. 이 경우 창업 계획서 제출과 창업활동기간을 고려한 이수학점 조정이 필요

예시) 2월에 창업계획서를 통해 창업현장실습 승인을 받고 5월에 창업한 경우 2개월(5월, 6월) 즉 8주에 해당하는 4학점을 신청하도록 규정에 반영

- 창업현장실습 학점을 부여받기 위해 창업현장실습 기간에 지속적으로 창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폐업 시 미이수 처리

## ■ 창업실습교과 학점부여

- 학점은 P와 F로 부여하되, 대학의 판단에 따라 상대평가 가능
  - 상대평가로 운영 시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가 학칙에 따라 평가
- 학점부여 방법 및 절차 예시

학기 종료 후 담당교수가 발표평가와 현장점검을 수행하여 기업의 운영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는가를 평가  
⇒ 학점 부여 ⇒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 ■ 창업실습교과 지도교수의 시수인정

- 교원업적평가에 창업실습교과 지도교수의 교육시수 인정을 명시(창업실습 50% 수준, 창업 현장실습은 현장실습 수준의 시수 인정 등)하되, 수준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

예시) 창업실습 3학점 과목의 경우 지도교수에게 1.5시수인정, 2학점 과목의 경우 1시수 인정

## 라 대상 학생의 자격요건

### ■ 대상학년 및 자격요건

- 휴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들이 창업실습교과 신청 가능을 권고
  - 창업교과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정기준, 예를 들어 창업강좌 1과목 이상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제한 할 수 있음

## 마 대학의 역할

### ■ 대학

- 대학은 창업실습교과 시행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제·개정 등 창업교과 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 조정·관리 수행
- 대학별로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를 두어 창업교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되, 승인의 업무를 제외한 기타 업무는 '창업교육 학사제도 실무위원회'를 통해 운영 가능
  - 창업교과 주관부서는 창업교육전담기구(LINC사업 대학의 경우 창업교육센터)이며, 관련 부서는 교무처를 포함한 창업교과의 운영과 관련된 부서임
  - 주관부서와 관련부서의 장으로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구성



# Ⅲ. 창업학점 교류제

## 1 추진 배경 및 목적

각 대학의 특성화된 창업강좌를 타 대학 학생이 수강할 수 있도록 대학 간 창업학점 교류에 대한 기준 제시

### ■ 각 대학의 특성화된 창업강좌 수강기회 제공

- 개별 대학이 운용할 수 있는 창업강좌 개설의 한계를 극복, 대학 간 우수하고 특성화된 창업강좌를 교차하여 수강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 우수 창업교원을 초청하기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대학의 경우, 창업강좌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13. 창업교육센터장 협의회 협의 내용)

### ■ 창업학점 교류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전국단위의 온라인 수강 시스템 구축

- 교육 수요자의 수강기회 확대를 통해 창업가 정신 확대

## 2 운영기준

### 가 창업학점 교류의 정의

#### ■ 창업학점 교류

- 창업학점 교류 협정을 맺은 대학 간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창업강좌로 지정된 타 대학의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 학점을 인정

## 나 창업강좌의 정의

### ■ 현재 대학에서 창업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나, 창업강좌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불편 존재

- 실제 창업을 위해서는 경영학의 주요 과목인 마케팅, 재무, 생산, 인사, 회계분야에 대한 소양이 필요. 이에 따라 일부 대학에서는 경영학 과목을 창업강좌로 집계

\* S대학의 경우 '13년 273개 창업강좌를 개설하고 15,000명이 수강했다고 보고

### ■ 창업강좌란 “강좌명에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강좌로, 창업을 위해 요구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강좌”로 정의

-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는 기업가(창업가)정신, 창업, 사업, 지식재산권(특허)으로 한정
  - 창업강좌명에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를 포함한 것은 일반 경영학 및 유사과목과의 구별을 위한 것
    - \* 예시) 상기 정의에 따르면 마케팅 과목은 포함되지 않으나, “창업마케팅”은 포함되며, 재무회계는 포함되지 않으나 “창업재무회계”는 포함

-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바, 창업강좌에 대해서는 대학정보공시나 산학협력실태조사 입력 시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검증제도를 실시('14년 시행 예정)

- 각 대학은 정보공시 입력시점에 자체적인 판단으로 창업강좌 개설과목 수 및 이수 학생 수를 입력하나, 입력 후 증빙자료를 제출. 연구재단은 별도의 ‘창업강좌 인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증 후 조정

\* 증빙자료는 수업계획서 및 중간/기말평가 보고서 등의 내용을 포함

## 다 창업학점 교류의 운영방식

### ■ 각 대학의 내부 학점교류 운영지침을 활용하되,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참여 대학간 창업강좌학점 교류 협정을 체결

- 창업강좌학점 교류 협정 포함 내용 예시
  - 창업강좌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창업강좌학점 교류 수강자격, 수강범위, 수강신청절차
- 창업강좌학점 교류 수강료 납부
- 창업강좌학점 교류 성적부여 및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
- 학생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창업강좌학점 교류에 관한 사항

### 창업강좌 학점 교류 협정(예시)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창업학점 교류 협정에 참여한 대학의 창업강좌 상호 수강 및 성적(학점)의 상호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창업강좌의 지정)** ① 각 대학의 창업교육 담당자는 수강신청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대학의 강좌를 창업강좌로 신청하고,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창업강좌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3조 (자격)** ① 창업학점 교류 학생은 소속대학교에서 1학기 이상 수료하고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자라야 한다.

② 소속대학교 재학기간 학업성적의 평균평점이 2.5(C+)이상이어야 한다.

③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4조 (수강범위)** ① 학기 중 또는 방학 중에 개설 되어있는 창업강좌로 지정된 과목으로 한다.

② 신청학점은 각 대학의 학점교류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 야간학부 학생은 주간학부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④ 정규학기 학점교류는 최대 2학기(1년)에 한한다.

**제5조 (추천 및 결정)** 교류 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의 소속 대학총장이 교류 해당 대학총장에게 추천하면, 당해 교류 대학총장은 자체심사를 거쳐 학점교류 학생으로 결정한다.

**제6조 (수강료 납부)** ① 수강료는 교류 대학간 협정에 근거하여 정한다. 단, 정기학기는 소속대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으로 교류 해당 대학교에 정산을 하고, 계절학기는 본인이 직접 교류 해당 대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교류 학생의 교류 기간에 필요한 수강료 이외의 비용일체는 교류 학생이 부담한다.

**제7조 (취득학점 인정)** ① 학점 교류 학생이 취득한 성적(학점)의 인정은 소속대학교 학부(과)와 학장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소속대학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의 성적(학점)취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학점 교류 학생이 교류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표기하되 평균평점 환산시에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전체취득 학점에 통산한다.

**제8조 (학생지도 및 관리)** ① 교류 학생의 지도 및 관리는 소속대학교와 교류 해당 대학교간의 긴밀한 협조에 의해 공동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류 해당 대학교는 교류 학생에게 소속대학교 학생과 같이 도서관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허락한다.

③ 교류 학생은 교류 해당 대학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IV. 추진체계

##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창업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성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결정

※ 관련 서류 평가, 현장 방문 및 대학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을 위해 합의제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효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 ■ 역할 및 기능

- 대학 내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계획 및 추진방안 마련
- 창업휴학, 창업대체학점 인정 등의 승인
- 창업융복합전공제의 개발과 심의
- 창업강좌 인정 심의
- 기타 창업교육 학사제도 전반에 관한 업무

### ■ 구성 예시

- 총장을 위원장으로 대학 내 학사제도 및 창업교육 전담기구의 장 등을 포함하여 5~7인으로 구성



# V. Q/A

## 1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관련



1. 매뉴얼에서는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를 두어 창업교육과 관련된 학사제도와 관련된 심의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도 도입시 매뉴얼에서 요구하는 명칭의 위원회를 반드시 신설해야 하는가요? 또한 위원장이 총장이어야 하는가요?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것은 창업교육 학사제도가 대학 내에 잘 정착되도록 설계한 것으로서 반드시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명칭으로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으로, 대학 내 학사제도를 담당하는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조직을 활용하는 경우 창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의 장이 위원회에 포함되어 창업교육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을 총장으로 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반드시 총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경우 기존조직의 체계를 따르시어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구축하시면 됩니다.



2. 위원회 소집이 어려워 매 사안마다 위원회를 통한 창업휴학 및 창업실습의 승인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심의 및 승인건수가 많은 경우 창업교육전담기구에 위임하고 추후 위원회에서 심의(서면심의 포함)를 하는 형태가 보다 실용적일 것입니다. 단, 관련된 규정의 승인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추진하시면 됩니다.

## 2 창업휴학제



1. 본교는 일반 휴학제도를 통해서도 4학기까지 연속으로 휴학이 가능한데, 창업휴학제도를 또 만들어야 합니까?



A 동 매뉴얼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대학에 매뉴얼 제공을 통해 손쉽게 제도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연속으로 휴학이 가능한 사유에 창업이 포함되어 있다면 창업휴학제를 별도로 도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창업휴학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의 경우라도 창업휴학이 가능한지요?



A 원칙적으로 창업휴학과 관련된 판단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에 제시된 허용제외 대상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의 전공과 관련이 있거나, 고용창출 효과 등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된다면 대학 내 위원회를 통하여 전략적으로 판단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3.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창업휴학이 가능한지요?



A 창업휴학은 원칙적으로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비전공분야 창업이라고 하더라도 대학의 판단으로 창업휴학 승인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창업휴학기간에 폐업하는 경우 일반휴학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A 창업휴학으로 승인되었고 창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휴학기간 중 폐업이 발생했더라도 창업휴학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창업휴학의 대상에 대한 자격요건(창업강좌 이수 등)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이 가능한가요?



A 매뉴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격요건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이 가능하나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두는 것이 제도의 정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대학이 창업현장 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인적인프라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점검을 창업휴학 승인요건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요?



창업현장 점검은 창업휴학 승인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제로 '12년의 경우 대학 학생창업 평균은 3~4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학교 내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현장점검은 필요합니다.



7. 창업준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여 창업 이전이라도 창업 휴학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창업에 대한 준비는 교육과정(창업강좌, 창업동아리, 창업실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일반휴학을 활용하여 창업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준비를 목적으로 한 창업휴학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대학의 판단으로 요건을 구체화하는 경우 창업준비를 목적으로 한 창업휴학의 승인도 가능할 것입니다.

〈사례 : 울산 U대학〉

● 자격요건을 예비창업학생과 창업학생으로 구분

(1) 예비창업학생: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재 창업활동 수행 중인 자

- ① 창업관련 공모전/경진대회 등에서 수상한자
  - ② 정부기관(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등)에서 실시하는 창업관련 지원사업 선정된자
  - ③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장기(2개월 이상) 창업 보육/교육 프로그램을 이수중인 자
- \*예비창업학생의 휴학신청은 1학기(6개월)만 가능하며, 미창업시 창업휴학 연장 신청 불가

(2) 창업학생 : 사업자 등록증에 신청학생이 대표(공동대표 포함)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휴학신청 한번에 2학기(1년)까지 가능하며, 창업휴학 연장 신청시 1년간의 창업기업 재무재표, 창업활동 실적, 향후 사업추진 계획서 등 제출

(3) 학사관리부서와 창업전담부서가 원활히 협조하여 창업휴학 관련 업무 수행



8.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기준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지 않나요?



매년 대학 및 정부기관별로 다양한 형태의 창업경진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3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1. 창업활동 인정학점 수준은 대학 자율로 결정이 가능한가요?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예시이며, 인정학점은 고등교육법에서 제시하는 범위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창업과 창업휴학제의 창업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동일합니다.



3. 창업대체학점을 교양학점, 전공학점, 일반선택학점 중 어떤 학점을 부여해야 하나요?



창업실습은 교양학점을, 창업현장실습은 전공학점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교과목 편성은 대학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장실습을 일반선택학점으로 부여하는 대학의 경우 창업현장실습이 현장실습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선택학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과목명을 창업실습과 창업현장실습으로 한정해야 하는가요?



해당 제도의 취지와 부합된다면 과목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대학정보공시와 실태조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입장에서 과목명을 통일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창업 전 활동도 창업준비활동으로 간주하여 학점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창업동아리 활동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인정의 폭이 작은 것이 아닌가요?



창업을 위한 실질적 준비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부합됩니다. 그러나 학점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담당교수가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 제도 시행 초기이며 창업동아리가 창업교육의 핵심지표라는 점을 고려하여 창업동아리 활동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6. 창업실습교과의 인정학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요?



6학점 이내로 권고한 것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학점의 인정) 및 제도시행 초기의 학습의 질과 관련한 창업실습교과의 검증문제로 인한 것으로, 대학의 판단에 따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창업(현장)실습교과 담당교수의 시수로 인정하는 경우, 교원의 일반강의가 줄어들어 대학입장에서 전임교원강의비율과 같은 지표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창업실습교과 지도교수의 시수를 인정해야 하는가요? 시수를 인정하기 위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교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창업(현장)실습교과의 시수인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학점이 부여되는 교과목이니 만큼 일정수준의 시수인정은 필요하되, 그 시수인정 수준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학사운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인정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점부여조건으로 지도교수의 5회 이상 지도와 시작품과 같은 결과물을 규정한 경우 각 지도건에 대한 결과보고서와 사진 그리고 결과물을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8. 매뉴얼에 창업(현장)실습 교과의 신청대상을 휴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창업(현장)실습 교과의 신청자격으로 2학기 이상 수료자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휴학생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대부분 동아리 활동이 1학년에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기 수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4

#### 창업학점 교류제



1. 본교는 창업관련 강좌가 아직 없는데, 모든 대학이 창업학점 교류제에 참여해야 하는가요?



학생의 수강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2. 사이버 창업 강좌를 위한 플랫폼 구축 계획 등이 있습니까?



현재 온라인 창업 강좌 교류 플랫폼 구성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후 운영 매뉴얼 등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